

건강관련식품 부작용 피해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 행정기관 실무자 면접사례를 중심으로 -

제미경·김정인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김영옥·이경옥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강사)

김 해 자 (소비자연맹 부산지회장)

김 지 선*(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대학원생)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건강관련식품의 소비도 급신장하게 되었으나, 건강관련식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어도 부작용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피해 확산의 방지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외 관련 문헌 고찰 및 외국의 피해구제 제도를 파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5개 지방청과 광역자치단체 14곳의 건강식품 담당자를 대상으로 2003년 9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요 면접 내용은 행정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건강식품 부작용 피해 접수 현황 및 접수 후 처리 과정, 부작용 입증방법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었다.

면접내용 분석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관련 식품 부작용 피해접수 현황 및 접수양식을 보면, 행정기관에는 부작용 피해사례 접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소비자단체나 소비자고발센터에 피해사례 접수가 다수 있는 상황이었다. 건강관련식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모든 행정기관이 접수양식으로는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접수 대장'을 쓰고 있었다. 둘째, 피해접수 이후의 처리과정을 보면, <신고→제품검사 및 수거→검사기관의 검사(기준규격의 적합 여부)→위법 사항 발견시 해당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부작용 피해발생 회사들의 문제 해결 태도를 보면, 당해 회사제품의 부작용을 통보하면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의 체질 때문이라고 주장하다가, 피해사실이 검사 결과로 입증되면 행정처분 결과에 대하여 수긍하는 편이고,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 경우 자사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피해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행정기관에서 보는 건강관련식품 부작용에 관한 문제점으로는 부작용 원인 파악이 어려움, 부당한 판매방식, 제조업체의 영세성 및 기만성, 소비자의 건강관련식품에 대한 그릇된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작용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원료의 원산지와 품질표시 및 체질별 주의 표시제도의 도입, 부작용 피해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식품관련법의 일원화, 유통과정의 관리, 건강관련식품 피해 해결을 위한 관련 규정 마련,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들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건강관련식품의 부작용을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소비자가 충분히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해발생에 따른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사전관리를 통한 피해발생의 예방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의 종합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관련식품의 제조·판매·사용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단계에서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